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9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개관	4
2. 총괄적 검토	6
3. 주요 조문별 검토	8
가. 법률 제명 및 목적 규정	8
나. 정의 규정 : 역사왜곡행위	11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임명 금지	14
라.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3
마. 부 칙	2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용만의원 등 169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28.

다. 회부연월일 : 2024.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여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 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심지어 이러한 인사들이 역사 및 교육 관련 공직이나 공공기관 등에 임용되고 있음.

최근에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용납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졌음.

이는 국가의 근본인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유린한 사실상의 매국행위라 할 것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임용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립운동·항일운동을 폄훼·비방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실체를 부정·왜곡하는 행위를 근절케 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 역사 왜곡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조).

다.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라. 대상기관들이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제2조의 역사 왜곡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의 임명이나 위촉에 관하
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토록 함(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공무원 등이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실체를 부정·왜곡하는 행위를 근절케 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으로서, 본칙 10개 조문,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역사 왜곡행위”를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일본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등 4개 사항으로 정의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역사 왜곡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며,

셋째,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사 왜곡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역사 왜곡행위 관련 진정 조사 및 권고, 역사 왜곡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동조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심사를 신청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르도록 하되, 심사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의 조문 체계】

구분	조문 내용	
본칙	제1조	목적
	제2조	역사 왜곡행위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	위원회의 업무 등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	의결정족수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	임명 금지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임명 금지 규정에 관한 적용례

2. 총괄적 검토

제정안은 역사 왜곡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며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사 왜곡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역사 왜곡행위 관련 진정 조사 및 권고, 정무직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전반적인 내용은 포괄적인 당위성 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동법은 역사 왜곡행위의 범위, 임명 등이 제한되는 직종의 범위 등 규율 대상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로서 기본권 제한의 원칙(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등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으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¹⁾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1) 이견태의원 대표발의, 2024. 8. 14., 의안번호 제2202861호

인사혁신처는 제정안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 역사 왜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역사 왜곡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행법 체계상 다른 결격사유와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무직공무원²⁾의 임용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경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점, 정무직공무원의 역사관 등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이미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정무직공무원은 효율적인 조직·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명권자에게 임면 관련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임(서울행정법원, 2000구2623).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법률 제명 및 목적 규정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 등이 대한민국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립운동·항일운동을 폄훼·비방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실체를 부정·왜곡하는 행위(이하 “역사 왜곡행위”라 한다)를 근절케 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이 법의 목적을 “공무원 등이 대한민국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립운동·항일운동을 폄훼·비방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실체를 부정·왜곡하는 행위(이하 “역사 왜곡행위”라 한다)를 근절케 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1조).

법률의 제명은 법률의 고유한 이름으로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정안은 일정한 범주의 행위를 역사 왜곡행위로 정의하고, 합의제기관

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역사 왜곡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역사 왜곡 행위 관련 진정 조사 및 권고, 역사 왜곡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동조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정무직공무원 등 임명시 역사 왜곡행위자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바,

역사 왜곡행위자의 공직임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정안의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고, 역사 왜곡행위 외에 헌법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 등을 통하여 그 범주를 정하거나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역사 왜곡행위에 상응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렇게 볼 때, 제정안의 법률 제명은 본칙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포섭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목적 규정은 법률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 일반적으로는 수단을 나열하고 목적을 규정하는 방식(~규정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명시하고 수단을 규정하는 방식(~하기 위하여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으로 표현하고 있음.

제정안의 목적 규정에는 법률이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목적 규정의 일반적 표현 방식을 고려하여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바, 이 법이 역사 왜곡행

위를 근절하여 헌법 수호와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역사 왜곡행위의 방지, 역사 왜곡행위 관련 진정 처리, 역사 왜곡행위자의 공직임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목적 규정에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나. 정의 규정 : 역사 왜곡행위

제2조(역사 왜곡행위) 역사 왜곡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일본제국주의의 지배 또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2. 러·일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3.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
4.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부정하거나 날조(오기·누락을 포함한다)하여 유포하는 행위

제정안은 이 법의 핵심적 용어에 해당하는 “역사 왜곡행위”를 1)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일본제국주의의 지배 또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2) 러·일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3)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 4)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부정하거나 날조(오기·누락을 포함한다)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 4가지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³⁾

3) 제정안은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역사 왜곡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포”는 발언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정한 범주의 역사적 사실이나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의 영토 규정을 미화, 정당화, 비방, 날조, 부정하는 발언 등 의사표현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포괄적인 당위성의 차원에서 볼 때, 이같은 행위를 역사 왜곡행위로 정의하여 규제적 조치의 대상으로 규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역사적 사실이나 헌법 규정에 대한 발언 등의 의사표현 행위가 이를 “미화” 또는 “정당화”한 것인지, “비방”, “날조” 또는 “부정”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 취지 또는 의도 등에 따라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역사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제정안 제3조 등에 따라 규제적 조치가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⁴⁾ 역사 왜곡행위에 대한 정의는 헌법 제21조⁵⁾에 따른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는 바, 제정안이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⁶⁾

4) 제정안 제3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역사 왜곡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제정안 제5조 :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업무로 역사 왜곡행위 관련 진정 조사와 권고, 역사 왜곡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무직공무원 등을 임명하고자 할 때,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역사 왜곡행위 여부에 대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는 임명 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5)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제정안은 역사 왜곡행위의 객체가 되는 역사적 사실이나 헌법 규정을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일본제국주의의 지배, 러·일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죄,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와 그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으로 특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적으로 역사 왜곡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를 방지하고 규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무원 등이 미화, 정당화, 비방, 날조 또는 부정하지 않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나 헌법 규정을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한 일부 사항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서는 안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제4조에 따른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행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6)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임명 금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함.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임명 금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 왜곡행위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제2조의 역사 왜곡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한정한다),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이하 “정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임명 금지) ① 제9조(임명 금지) ① 국가등이 정무직공무원등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역사 왜곡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른다.

② 국가등이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무직공무원등을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역사 왜곡행위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에 대하여 역사 왜곡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한정한다),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이하 “정무직공무원등”)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안 제3조).

또한, 국가등이 정무직공무원등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역사

왜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안 제4조에 따른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임명하되, 심사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9조).

제정안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인사 운용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던 정무직공무원등 임명 대상자에 대한 헌법관 및 역사관의 검증에 관한 사항을 법률상의 제도로 편입시켜 일정한 요건 하에 당사자를 정무직공무원등 임명에서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정무직공무원등 임명 행위에 대해 임용권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정무직공무원등의 임명에 있어 헌법관과 역사관, 국가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포괄적인 당위성 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그릇된 헌법관과 역사관,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정무직공무원등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정무직공무원등 인사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과 같이 역사적 사실이나 헌법 규정에 관하여 과거에 행하였던 발언 등 의사표현을 이유로 정무직공무원등의 임명 등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15조⁷⁾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 및 제25조⁸⁾에 따른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 제21조⁹⁾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로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당사자가 하였던 발언 등 의사 표현의 내용이 역사 왜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공직 등에의 임명 기회를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 및 제25조에 따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¹⁰⁾를 제한하는 법률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도 헌법 제37조제2항¹¹⁾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

7)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8)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9)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위가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 또는 예술표현의 수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면 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학문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

[헌법재판소, 94헌가6, 1996.10.31.]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음반은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보장받음과 동시에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11)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¹²⁾ 특히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
성 원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를
엄격한 의미에서의 명확성이라고 보고 있음.¹³⁾

그러나,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역사 왜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역사적 사실이나 헌법 규정에 대한 발언 등 의사표현 행위가 이를 “미
화” 또는 “정당화”한 것인지, “비방”, “날조” 또는 “부정”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의사표현 행위가 이에 포섭되는지 여부는 구체
적인 상황이나 경위, 취지 또는 의도 등에 따라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
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사유가 되는 실체적 요건이 기본
권 제한 입법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12) [헌법재판소, 2000헌가8, 2002.1.31.]

“법치국가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13) [헌법재판소, 2012헌바37, 2013. 6. 27., 전원재판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될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벌조항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원칙을 요구한다 할 것이며, 그 정도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명확성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제정안은 역사 왜곡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명 당시의 견해나 입장을 불문하고 일정한 기간적 제한 없이 해당 행위자를 일률적으로 역사 왜곡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직 등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참고로, 헌법재판소¹⁴⁾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나목과 관련하여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여 범행 이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

둘째, 역사 왜곡행위를 이유로 임명 등이 제한되는 직종의 범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3조제2항 및 제9조는 역사 왜곡행위를 이유로 임명이나 위촉에 제한을 받는 직종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¹⁵⁾나목에 따

14) 국가공무원법(2020헌마1181, 2022. 11. 24 선고/ 2020헌마 1605, 2023.6.29.), 지방공무원법(2020헌마 1605, 2023.6.29.)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주요 내용(2020헌마1181, 2020헌마1605)

- ▶ ●다양한 임용예정 직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유형이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무담임권을 ●영구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 ▶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
- ▶ 입법자가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해소하도록, 2024. 5.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더 위헌적인 법적공백 상태 방지를 위한 예외적 결정)

른 정무직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주요한 직종을 특정하여 임명 등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안 제1조에 따른 제정안의 입법 목적이나 공적 사무를 담당하는 직종 또는 직위별 직무의 성격 및 내용, 직무상 권한 등 제반 요건을 감안할 때, 역사 왜곡행위를 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되는 직종 또는 직위를 정무직공무원 중 일부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에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임원을 비롯하여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이나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의 행사나 임명에 있어 역사 왜곡행위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¹⁶⁾

15)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생략)

16)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제정안 제4조에 따른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법률상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가등이 정무직공무원등을 임명하고자 할 때 사전에 거쳐야 하는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 심사의 법적 효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국가등이 정무직공무원등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고 역사 왜곡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되, 동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무직공무원등을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정무직공무원등 임명 시 역사 왜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다고 명시하여 역사 왜곡행위 해당 여부가 임용결격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동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기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치면 심사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임명이 가능한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심사 결과 역사 왜곡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정무직공무원등으로 임명한 경우 동 임명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역사 왜곡행위 여부에 대한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 심사의 법적 구속력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법문

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

넷째, 제정안 제9조에 따른 임용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 직종 및 직위에 재직 중 역사 왜곡행위를 한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국가등이 정무직공무원등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역사 왜곡행위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심사 결과에 따르도록 하여 역사 왜곡행위를 한 사람을 정무직공무원등에 임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임용결격 사유에 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있음.

임용결격 사유의 경우 통상적으로 재직 중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당연퇴직 제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 정무직공무원등의 임명 시에 한하여 공직 등의 취임 전 과거의 발언 등 의사표현 행위에 대해서만 역사 왜곡행위 여부를 심사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제정안의 입법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무직공무원등이 재직 중 역사 왜곡행위를 한 경우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를 해임하도록 하는 등 해당 공직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면직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은 없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다섯째, 법제적 측면에서 법문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3조제2항은 역사 왜곡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공무원등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동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적극적인 집행을 유도하는 등 법률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책무규정으로 규율하기보다는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또한, 제정안 제9조의 경우 조 제목이 “임명 금지”로 되어 있으나, 동 조항이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정무직공무원등의 임명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역사 왜곡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심사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봄.

라.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사 왜곡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2. 역사 왜곡행위 관련 진정 조사 및 이와 관련된 권고
3. 역사 왜곡행위를 정당화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4. 그 밖에 역사 왜곡행위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1.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되거나 지명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 왜곡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역사 왜곡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역사 왜곡행위 관련 진정 조사 및 이와 관련된 권고, 역사 왜곡행위를 정당화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그 밖에 역사 왜곡행위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역사 왜곡행위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안 제4조 및 제5조),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6조), 그 밖에 의결정족수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역사 왜곡행위 관련 진정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한 권고를 하며, 역사 왜곡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바, 민주성·공

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위원회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봄.

역사 왜곡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업무의 경우 제정안 제9조에 따라 국가등이 정무직공무원등을 임명하는 경우에 한정된 것인지, 일반 국민이 특정인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심사 청구의 신청 및 접수, 심사와 그에 수반되는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심사 결과의 내용 및 효력과 통지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 왜곡행위 관련 진정 조사 및 권고는 위원회가 역사 왜곡행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권고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¹⁷⁾ 이에 상응하도록 진정의 신청 및 접수, 조사의 방법 및 절차, 권고의 내용과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¹⁸⁾

17)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은 「정부조직법」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동 제정법률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8) 유사 입법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52조 참조

둘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신분과 관련하여 위원장에 대한 사항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의 임명이나 선출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국회가 5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입법례¹⁹⁾를 참고하여 당파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정인이 역사 왜곡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공적으로 확인하는 결정을 하고 역사 왜곡행위에 관한 진정을 조사하여 대외적으로 권고를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 위원의 신분 보장, 제척·기피, 결격사유,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둘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아울러, 제정안 제6조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거나 지명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역사 왜곡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일부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적격성은 국회나 대법원장, 대통령이 검증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바,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자 지원하거나 신청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여 해당 당사자로 하여금 역사 왜곡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도록 규정하는 입법 방식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역사 왜곡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인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역사 왜곡행위에 관한 진정 조사 및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심리와 의결의 공개에 관한 사항, 출석 회의의 원칙과 예외적으로 서면 회의가 가능한 사유 등 회의 운영의 절차와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안 제7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개회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 금지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임명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임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정안 부칙은 동 제정법률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안 부칙 제1조), 제9조에 따른 임명 금지 규정을 제정법률 시행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임용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안 부칙 제2조).

제정안은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있으므로 하위 법령의 제정, 위원 임명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제정법률 공포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봄.

제정안 부칙 제2조의 임명 금지 규정에 관한 적용례는 안 제9조에 따른 임용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 직종 및 직위에 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임용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소급적용에 관한 부칙 규정에 해당함.

다만, 제정법률 시행 전에 임명되어 재직 중인 현직자에 대하여 임명

제한에 관한 신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현직자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경과조치를 둘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안 제9조가 정무직공무원등 임명 시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직자에 대해 안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정법률 시행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현직자가 역사 왜곡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해임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342
